

제3차산업경제위원회  
2016.7.12(화) 17:00

충청북도 농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조례 폐지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

산 업 경 제 위 원 회  
수석전문위원 오성일

# 충청북도 농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

## 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## 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16년 6월 29일

나. 회부일자 : 2016년 6월 30일

## 3. 제안 이유

- 본 조례는 충청북도 농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을 위해 제정되었으나, 상설전시판매장이 조례에 규정된 기능에 맞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고, 이를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
## 4. 주요내용

- 충청북도 농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조례 폐지

## 5. 검토의견

- '충청북도 농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조례 폐지조례안'은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촌특산품을 상설전시하고 판매하기 위해 조성되었는데 동 상설전시판매장이 조례에 규정된 기능에 맞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는 적절하다고 사료됨.
- 다만, 동 조례의 폐지에 따라 향후 상설전시판매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관련 부서의 설명이 필요함.